

중국 비관세장벽 이슈

China Non Tariff Barriers Issue

중국 해관총서, 한국산 파프리카 검역 시 라벨링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



중국 해관총서, 《검역공고》를 통해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 허용 및 검역 기준 제시

2019년 중국 해관총서(海關總署)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입을 허용하고 《한국 파프리카 수입에 대한 검사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(关于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的公告, 이하 ‘검역공고’)》를 발표함. 한국산 파프리카는 2020년 11월부터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되었으며, 2020년 수출 규모는 약 2,700kg임

하지만 한국산 파프리카 제품이 라벨링 오류로 인해 중국의 검역 과정에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파프리카 제품은 《검역공고》에 따라 수입 품종, 요구사항, 포장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, 한국 수출기업은 《검역공고》의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함. 《검역공고》에 따른 주요 수입 요건은 다음과 같음

(1) 생산업체 사전 등록 필요

- 중국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의 온실, 선과장, 냉장창고는 중국 측에 검토, 승인받아 등록해야 함

(*) 생산업체 사전 등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9월 말까지 등록된 업체의 역추적정보(이름, 주소, 등록번호)를 해관총서에 등록하기 위해 제공함

(2) 식물검역증명서 요구사항

-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으로 수입될 때마다 한국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‘식물검역증명서’를 제출해야 함
- 비고란에 ‘해당 파프리카는 《한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 검역 조건》에 부합하며 중국 기관 지정 유해 물질 미 함유’라는 내용을 추가 표기해야 함

(3) 포장 및 라벨링



- 한국산 파프리카의 포장 재질은 중국 식물검역 요구에 따라 위생적이고 깨끗한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함
- 모든 외포장박스에 영어로 파프리카 품목, 산지(도, 시), 생산국가, 온실 등록번호, 포장공장(명칭, 등록번호)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함
- 모든 화물의 외포장에 중문으로 ‘중국수출(輸往中华人民共和国)’ 문구를 표기해야 함

《라벨통칙》에 따라 중문 라벨 표시 규정도 주의해야

중국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 제품의 라벨 준비 시, 《검역공고》의 외포장 라벨링 규정뿐만 아니라 《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표장 식품 라벨통칙(GB 7718-2011, 이하 라벨통칙)》을 준수하여 제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함. 《라벨통칙》에서 규정한 중문 라벨의 표시항목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따라서 중국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《검역공고》와 《라벨통칙》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라벨링 및 생산업체 사전등록, 수입검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중국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※한국산 파프리카 수출 시 라벨링 표시 내용

	
외포장상자 표시 내용	중문 라벨 표시 내용
외포장박스 표시내용	① 파프리카 형태 ② 산지(도, 시, 군), ③ 생산국가 ④ 온실 명칭 및 등록번호 ⑤ 선과장 명칭 및 등록번호(영문) ⑥ '중국수출(输往中华人民共和国)' 표기(중문)
중문 라벨 표시내용	① 제품명 ② 원재료 ③ 제조일자 ④ 보존기한 ⑤ 저장온도 ⑥ 수출업체 ⑦ 수입업체명 ⑧ 수입업체 주소 ⑨ 수입업체 연락처 ⑩ 순중량
중국 검역 준비 서류	① 식물검역증명서 ② 동식물 수입허가서 (중국 수입업체 준비) ③ 기타 관련 서류 (선하증권, 수출입 계약서, 원산지 증명서, 위생증명서, 영수증, 포장명세서 등)

출처

해관총서(海关总署), 海关总署公告2019年第190号 (关于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的公告), 2019. 12. 10
 중국질량신문망(中国质量新闻网), 海关总署关于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的公告, 2019. 12. 11